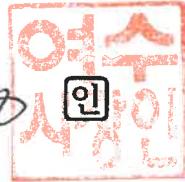
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1 일

여 수 시 장 2022.12.01



여수시 조례 제1805호

붙임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 1부.

##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”를 “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”로, “주민을 보호하고 주민”을 “시민을 보호하고 시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주민의”를 “여수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주민이”를 “시민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음주청정지역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금주구역”이라 함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”을 “(금주구역의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음주청정구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음

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3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(校舍)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
6.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,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.  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  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주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금주구역 해제의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5조) 중 “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제9조(종전의 제8조) 중 “제4조 제3항”을 “제4조제4항”으로,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과태료)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

한 사람에게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0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건전한 음주문화”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</li> <li>2. (생 략)</li> <li>3. “음주청정지역”이라 함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</li> <li>4. (생 략)</li> </ol> <p>제4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 ① 시장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----- ----- ----- -----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여수시민 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----- ----- 시민 ----- ----- ---.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“금주구역”이라 함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) ① -----</p>

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정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주택법」 제2조 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

#### <신 설>

3. · 4. (생략)

#### <신 설>

- ② 시장은 음주정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<신 설>
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정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금주구역 -----  
-----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3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(校舍)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
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6.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,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.

② ----- 금주구역 -----  
-----  
-----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④ ----- 금주구 -----

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·계도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기관·단체 등에서 문화·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5조(청소년의 보호) 시장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, 홍보,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 · 제7조 (생 략)

제8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시장

역 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제5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 ①

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주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금주구역 해제의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제6조(청소년의 보호) ----- 시에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 · 제8조 (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)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-----

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(“자원봉사단체”를 포함한다)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활동비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9조 (생 략)

##### <신 설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2020. 4. 14. 조례 제150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제4조제4항

금주구역

#### 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1조(과태료)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